

도 넘은 지자체 축산업 규제 강화

축산업이 위기에 내몰렸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축산업의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대로라면 축산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충남 홍성군의회는 9월 7일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의 기준점이 되는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이 기존 ‘주택간 거리 100m 내 12가구’에서 ‘7가구 미만’으로 강화됐다.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기준보다 규제 강도가 세다. 강원 철원군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축산농가들은 생존권과 축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기존 축사까지 개축 등을 할 수 없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축산업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판한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축을 사육할 만한 곳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지자체들은 가축사육 제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밀어붙인다면 축산업의 기반 봉괴와 축산농가 생계 위협 같은 부작용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최근 열린 축산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지역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꼭 넓게 수렴해야 한다.

규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규제 강화보다 지역 내 축산규모에 맞는 공공 처리시설 등 지역민과 축산농가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자체의 진정한 역할이다. 정부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축산농가들도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악취나 축산 분뇨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축산 등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농민신문 [2018. 9. 12]